

圖書館法 施行令과 特殊圖書館

—公務員으로서의 司書職—

李 喆 珪

目 次

- 一. 序 言
- 二. 特殊圖書館과 法の 規定問題
- 三. 公務員으로서의 特殊圖書館職員
 1. 法的 資格
 2. 施行令의 問題點
 3. 教育, 講習問題
- 四. 結 言

一. 序 言

圖書館政策은 大概 立法을 통한 成文化된 圖書館法規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點 先進 各國에서는 이미 오래前 부터 各種 圖書館法規가 制定되어 圖書館制度의 確立과 活潑한 圖書館奉仕를 展開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나라에도 1963年 10月 28日 法律 第1424號로서 圖書館法이 制定公布되었다. 同法中에 圖書館의 種類로서 國立中央圖書館, 公共圖書館, 學校圖書館, 特殊圖書館等으로 區分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月 26日 宇大統領令第2086號로 同施行令이 公布되어 公共圖書館 施設基準이 마련되었다. 同施行令이 公布되자 圖書館界人士나 文教當局 關係者도 施行令의 內容에 對하여 紙上(國會圖書館報)을 通하여 또는 各種 圖書館大會를 通하여 發表한바 있음으로 여기에서는 다시 圖書館法 施行令의 全般的인 內容을 檢討할 必要는 없다고 生覺되며 다만 圖書館法이나 同施行令이 特殊圖書館과 關係되는 事項에 關하여 言及하고자 한다.

二. 特殊圖書館과 法の 規定問題

圖書館法 第3條(圖書館의 種類) 第4項을 보면 「第1項에서 “特殊圖書館”이라 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其他 法人 또는 團體가 圖書館資料를 蒐集整理 保管하여 그 所屬員의 敎養과 調查 研究 및 레크레이션等 그利用에 供함을 目的으로하는 施設을 말한다」 또한 第4條(特殊圖書館에 對한 適用排除) 「特殊圖書館과 그設立者에 對하여서는 이法이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이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라고 規定

하고 있다.

이것은 勿論 特殊圖書館의 性格이 公共圖書館이나 學校圖書館과는 달리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企業體, 銀行, 學會, 研究機關等の 團體가 그들의 特殊性에 따라 제각기 專門分野의 資料를 蒐集整理하고 特殊한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特定人을 利用 對象으로하여 組織된 施設임으로 公共圖書館이나 學校圖書館과 마찬가지로 機能이나 施設基準等を 圖書館法이나 同施行令에 일일이 規定할수는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設立者의 意圖에 따라 必要한 建物, 圖書館資料, 閱覽施設 및 其他 모든 施設을 自由로 갖출수있게 하고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理由로서 特殊圖書館의 法規定 關係는 問題로 삼을수 없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그機關, 團體에서 必要에 依하여 個別的으로 組織法規나 規則을 만들어 施行하던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境遇, 特殊圖書館部門에 屬하는 國會圖書館은 1963年 11月 26日 宇로 國會圖書館法을 制定公布하였고 그法中에는 勿論 機能, 組織, 職制等이 規定되어 現在 運營하고 있고 日本에 例를보면 日本에는 行政, 司法, 各部門에 屬해 있는 官廳圖書館은 日本國立國會圖書館에 支部 圖書館으로 되어있어 關係法規는 國立國會圖書館法에 挿入되어 있고 各支部 圖書館의 所管事務에 對하여서는 各其 그部處의 設置法, 組織法, 規程 또는 規則으로 定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地方公共團體의 議會에 設置하는 圖書館에 對하여는 地方自治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特殊圖書館은 特殊한 性格을 가지고 있는 것임으로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三. 公務員으로서의 特殊圖書館職員

公務員으로서의 圖書館職員은 國·公立의 公共圖書館 國·公立의 學校圖書館 그리고 行政, 立法, 司法의 官廳에 屬해 있는 特殊圖書館의 職員은 모두 公務員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司書資格은 圖書館法施行令에 依하면 公務員任用令에 依하게 되어 있고 私立機關의 特殊圖書館, 公共圖書館, 學校圖書館에 두는 司書資格

은 그資格에 따라 正司書와 準司書 또는 司書教師로 區分하게 되어있으므로 여기에 問題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問題는 非單 特殊圖書館의 從事하는 公務員의 限한 것이 아니고 國·公立의 各種圖書館의 職員이 該當되는 것임으로 特殊圖書館分野에서만 取扱할수는 없는것이다. 그런 關係로 公務員 立場에서 施行令에 規定된 司書資格과 私立圖書館의 司書資格問題를 取扱하기로 하고 먼저 圖書館法施行令中 司書資格에 關한 規定을 살펴보기로 한다.

1. 法的資格

司書職員의 法的資格은 지난 3月26日字로 公布된 圖書館法施行令 第4條에 規定되어 있으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第4條 (司書職員의 資格과 區分)

① 法第6條의 規定에 依한 司書職員中 國·公立의 公共圖書館 또는 國·公立의 學校圖書館에 두는 司書職員의 資格은 公務員任用令에 依하여 私立의 公共圖書館 또는 私立의 學校圖書館에 두는 司書職員은 그 資格에 따라 이를 正司書와 準司書로 나눈다.

② 正司書가 될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에 1에 該當하는 者로서 文教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文教部長官으로부터 그資格證을 받은 者라야 한다.

1. 大學의 圖書館學科를 卒業한 者 또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力이 있는 者.
2. 大學卒業者 또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力이 있는 者로서 文教部長官이 指定하는 機關에서 圖書館學에 關한 講習을 320時間 以上 履修한 者.
3. 準司書로서 司書業務에 3年 以上 從事한 經歷이 있고 文教部長官이 指定하는 機關에서 圖書館學에 關한 學點 10學點 以上 取得하거나 圖書館學에 關한 講習을 160時間 以上 履修한 者.

③ 準司書가 될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1에 該當하는 者로서 文教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文教部長官으로부터 그資格證을 받은 者라야 한다.

1. 初級大學卒業者(實業高等專門學校 卒業者를 包含한다) 또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力이 있는 者로서 在學中 또는 卒業後 文教部長官이 指定하는 機關에서 圖書館學의 關한 學點 15學點 以上 取得하거나 圖書館學에 關한 講習320時間 以上 履修한 者.
2. 高等學校卒業者 또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로서 司書業務에 2年 以上 從事한 經歷이 있고 文教部長官이 指定하는 機關에서 圖書館學에 關한 學點을 20學點 以上 取得하거나 圖書館學에 關한 講習을 320時間 以上 履修한 者.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依한 機關의 指定과 圖書館學에 關한 講習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文教部令으로 定한다.

그리고 附則 經過措置「이令 施行前 國立圖書館 學校의 卒業者와 延世大學校附設 韓國圖書館學堂(同大學校附設圖書館學校를 包含한다)에서 所定의 過程을 修了한 者 및 文教部長官이 認定한 機關에서 8週間 以上의 圖書館學에 關한 講習을 받은 者는 이令에 依한 正司書의 資格證을 받을수 있다」

「이令 施行前 初級大學卒業者 또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力이 있는 者로서 文教部長官이 認定한 機關에서 圖書館學에 關한 學點을 10學點 以上 取得한 者 또는 3年 以上 司書業務에 從事한 經歷이 있고 文教部長官이 認定한 機關에서 實施한 圖書館實務講習을 50時間 以上 履修한 者는 이令에 依한 準司書의 資格을 받을수 있다」

위에 “正司書 또는 準司書의 資格證을 받고자 하는 者는 文教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1967年來까지 文教部長官에 그資格證의 交付申請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司書職員의 資格基準을 明確히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前述한바와 같이 法的 根本精神과 趣旨와는 달리 私立의 公共圖書館 私立의 學校圖書館의 司書職員은 同施行令의 資格規定을 適用시키고 國·公立의 公共圖書館, 國·公立의 學校圖書館, 行政, 立法, 司法의 各部門에 屬해 있는 特殊圖書館에 從事하는 公務員에 對하여는 公務員任用令에 依한다 하였음은 모순된 일이라 아니 할수없다.

이點에 對하여 簡界 人士들은 勿論 文教當局 關係者도 矛盾性を 指摘라고 한 바있다. 이 問題는 現在 國·公立의 各種圖書館에 勤務하고 있는 職員들의 救濟策이나 有資格者의 代替方法案이 模索되어야 한다고도 言及한바 있다. 事實上 現在로서는 現職者의 問題라든가 有資格者의 問題라든가 여러가지 困難한 點이 있다고 하겠으나 圖書館法施行令의 精神을 살리고 一律의 民法의 適用을 維持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適當한 일일것이다. 다시 말하면 國·公立의 圖書館 司書職員이나 私立機關의 圖書館 司書職員이나 平等하게 法的 適用을 받도록 하고 過度的 措置로서 一定한 期間을 定하여 短期教育을 實施하여 資格을 附與함으로써 現職者 救濟問題와 有資格者 代替問題는 解決될수 있다고 生覺한다. 施行令公布 直時로 法施行을 生覺하여 有資格者의 確保나 現職者 整理問題가 困難하다 하여 國·公立의 圖書館에 두는 司書職員은 公務員任用令에 依하도록 規定하고 私立의 圖書館에 두는 司書職員에게는 그 資格에 따라 正司書와 準司書로 區分하여 適用토록 한다

는 것은 憲法精神에 違背되는 二律의인 法制는 아무리 生覺해도 理解가 되지 않는다.

이제 同施行令 第4條(司書資格과 區分)에 關한 事項에 對하여 몇가지 問題點을 드러 보기로한다.

2. 施行令의 問題點

(1) 圖書館法施行令 第4條1項 「……司書職員中 國·公立의 公共圖書館 또는 國·公立의 學校圖書館에 두는 司書職員의 資格은 公務員任用令에 依하여……」라고 規定되어 있다.

여기에서 國·公立이라 함은 말할것도 없이 公務員을 말하는 것이며 行政, 立法, 司法 各部에 屬해 있는 政府機關의 特殊圖書館 職員도 包含되는 것이다. 따라서 國·公立의 圖書館職員은 다른 公務員과 마찬가지로 採用, 任用, 任免, 保障, 職階, 職制, 給與, 勤務條件, 懲戒, 服務, 教育訓練等 모두 公務員法規에 依하여 規定되어 있다. 그러므로 公務員인 경우에 司書職員은 採用이나 任用に 있어서 司書資格의 有無는 何等에 問題가 되지 않는다. 다시말하면 公務員으로서 採用되는 司書職員은 圖書館學을 專攻하였든 안하였든 間에 公務員任用令에 依한 試驗科目에 合格만 하면 司書官이고 司書고 任用 될 수 있는 것이다.

國家가 司書職의 專門性을 認定하고 司書資格制度를 規定하였다면 當然히 專門職의 資格證所持者가 任用되는 것이 原則임으로 一律의인 法の 適用과 實施를 爲하여서라도 앞으로 이러한 制度가 確立되지 않은다면 司書資格의 規定은 有名無實한 法이 되고 말것이다.

(2) 同條項에서 「……國·公立의 公共圖書館 또는 國·公立의 學校圖書館에 두는 司書職員의 “資格”은 公務員任用令에 依하며……」 여기에서 「資格」이란 公務員任用令에 依하여 任用된 司書書記, 司書, 司書官補, 司書官等의 職位가 即 「資格」이란 말로 解釋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公務員採用試驗에 合格하여 任用되는 데 不過한 것이지 圖書館法施行令에서 規定하는 資格이나 國家考試에 依한 資格이 아니기 때문에 眞情한 意味에서의 「資格」이 될 수 없으며 同施行令에서 司書資格을 規定한 根本精神과 그뜻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公務員任用令에 依하여 採用되어 司書職에 補職을 받은 職位와 專門性을 認定하여 大學에서 圖書館學科를 卒業한 者나 所定의 教育이나 講習을 받아 國家가 個人에게 주는 資格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施行令에서 規定하는 根本趣旨의 資格을 現職은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資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個人의 것이라는 意味이다. 또한 이資格을 가지므로써 어느때고 司書職에 從事할수 있는 身分의 保障이 되어야만 할것이다. 그러므로 公務員인 경우 正司書나 準司書의 資格은 何等의 問題가 되지 않기 때문에 正司書의 資格을 갖었

다하더라도 司書가 될수 있고 準司書의 資格을 갖었다 하더라도 司書官이 될수 있고 또한 司書資格이 全然 없다 하더라도 司書官補가 될수 있기때문에 公務員에도 同施行令이 規定한 司書의 資格制度는 何等의 意義가 없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수 없다.

(3) 同條項에서 「……私立의 公共圖書館 또는 私立의 學校圖書館에 두는 司書職員은 그資格에 따라 이를 正司書와 準司書로 나눈다」라고 規定되어 있다. 國家機關에 圖書館司書職員은 公務員任用令에 依하게 하고 私立機關의 圖書館司書職員에 對하여서는 그資格에 따라 正司書와 準司書로 區分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矛盾이다. 專門職에 對한 資格을 法으로 規定하여 國家가 그 資格을 認定 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國家機關에서 일하는 司書職員은 法の 適用을 받지않고 다만, 私立機關만이 法을 지켜야 된다는것은 一律性이 없는 法の 盲點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여기에도 資格에 따르는 司書의 區分만을 하였지 何等의 制度가 確立되어 있지 않아 任命權者나 責任者가 實에 있어서 司書職員採用을 司書資格이 있는者나 없는者나 任意로 하여도 無妨한 狀態이다. 왜냐하면 司書資格이 없는者를 司書職에 從事케 해도 何等 法的으로 막을수 없기 때문이다. 專門職인 司書職員은 國家機關이나 私立機關이 同時에 適用되도록 措置되어야 할것이다.

圖書館의 專門職인 司書資格에 對하여 施行令이 規定하고 있으나 그身分에 對하여 充分한 制度가 確立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곳에서는 認定하고 어느곳에서는 認定하지 않은 狀態가 될 것이다.

(4) 專門職인 司書는 그職務內容에 있어서 專門性, 特殊性, 技術性 能力과 資質等 他部門에 比하여 特殊하기 때문에 國家나 社會에서 專門家로서의 資格이 要求되어 圖書館法施行令에 司書資格을 規定한 것만은 事實일것이다. 例를 들면 醫師나 辯護士나 藥士나 特殊한 部門에 從事하는 사람에게는 資格證이나 免許證이 있고 資格證이나 免許證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業에 從事할수 있드시 司書職도 資格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業務를 擔當하도록 制度的 措置가 마련 되어야 할것이다. 勿論 法的措置를 하지 않더라도 人事面의 運營을 제대로 하면 問題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實情에서 果然 얼마나 期待할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앞으로 實情을 考慮하여 公務員任用令에 「司書의 資格을 가진者가 아니면 司書가 될수 없다」라고 法的措置가 要請된다. 이와같이 改正되지 않는다면 앞에서 指摘한바와 같이 有名無實한 施行令이 되고말 憂慮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法的措置가 된다면 司書職의 專門性은 確立되는 것이고 社會的 地位도 더한층 높히 認定받게

될 것이다. 現在에 있어서는 이點에 對하여 遺憾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밖에도 또한 重要的 것은 司書의 經濟的條件을 다른 專門職業과 同等하게 給與의 改善을 行한다던 養成된 有能한 人材를 確保할 수 있을 것이다.

3. 教育, 講習問題

司書職의 特殊性이나 專門性を 認定하고 Profession의 確立을 爲하여 圖書館法施行令 第4條4項에 司書資格을 얻는데 所要되는 教育, 講習에 對한 機關의 指定과 圖書館學 講習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文敎部令으로 定하도록 되어 있다. 同施行令附則에 依하여 正司書, 準司書의 有資格者의 數는 約 600餘名으로 推算된다. 이것은 現在 全國의 圖書館司書職에 從事하고 있는 總人員 3,146名(韓國圖書館協會發行 圖書館統計冊子인 「韓國의 圖書館」 1965년에 依함)에 比하여 約 3分之1도 되지 않는다. 이 3,146名은 圖書館種別로 區分하여 본다면 公共圖書館 49個所에 412名, 大學圖書館 109個所에 838名, 特殊圖書館 71個所에 472名, 學校圖書館 1,422個所에 1,424名, 合計 3,146名이다. 大部分이 國·公立의 公共, 大學, 特殊, 學校圖書館等의 公務員들이다.

그러므로 司書資格이 없는 現職者나 司書職에 從事할 사람들의 資質이나 技術을 向上시키고 專門職의 確保를 爲하여서도 文敎部長官이 指定하는 機關에서 所定의 圖書館學에 關한 學點이나 講習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對하여서는 當局에서 實施할것이나 여기에서 問題로 삼고 싶은 것은 먼저 指摘한바와 같이 國·公立의 圖書館司書職員이나 私立機關의 圖書館司書職員이나 다 같이 司書의 資格證을 가진 者가 아니면 司書가 될 수 없다는 法的措置가 되어야만 自然히 有資格者를 採用하게 되고 專門職으로서의 資格을 取得하려고 教育이나 講習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國家가 附與하는 이 資格은 어느곳에서나 適用되는 原則이 正常的으로 되어야 한다.

萬一 이러한 措置가 이루어지지 않을 境遇 教育이나 講習을 받아 구지 資格을 얻고자 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앞으로는 資格證이 있고 없고 採用이 可能한 것임으로 事實上 圖書館法施行令의 資格規定이 그效力을 거두지 못할 것이 뻔한 일이다. 또한 私立機關의 圖書館司書職員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으로 前記한 바와 같이 公務員任用令을 改正하여 國家機關에서 부터 制度를 確立함으로써 私立機關에도 準用될 것이다. 그리하여 一律의이고 統一된 制度의 確立이 重要的 일이며 이것이야말로 法的 根本精神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特殊圖書館의 專門職司書職員의 資質, 能力, 技術等은 더욱 重要하다. 特殊圖書館의 司書職은 自己의

武器인 모든 資料를 道具로 하여 利用者가 求하지 못하는 어려운 問題를 解決하여 주는 重要的 機能을 받고 있는 것이다. 特殊圖書館의 가장 重要的 奉仕는 書誌業務로서 必要한 文獻의 蒐集과 迅速正確한 整理 그리고 目錄, 索引, 抄錄等을 作成하여 그 所屬機關에 職務遂行에 있어서 能率과 向上을 期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特殊圖書館의 司書職員은 圖書館에 對한 專門知識과 一般學問의 專門知識을 兼備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教育에 있어서도 大學의 圖書館學科 以外에 一般大學을 卒業하고 圖書館學科大學院過程이나 一年以上의 教育過程을 가진 教育機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되고 있는줄 안다. 現在 成均館大學校의 司書教育院은 하나의 좋은 例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專門職으로서의 司書資格을 規定하고 資格證을 준다고 하면 圖書館學을 專攻하지 않았거나 其外 圖書館에 關한 教育이나 講習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爲하여 司書資格 取得을 爲한 國家試驗制度가 마련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採用試驗이 아니고 資格試驗으로서 例를 들면 醫師試驗, 藥士試驗, 護士試驗等과 같은 試驗制度가 必要하다고 보는 것이다.

四. 結 言

特殊圖書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其他 法人 또는 團體가 圖書館資料의 蒐集整理 保管하여 그所屬職員의 敎養과 調査, 研究 및 레크레이션 등 利用에 供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임으로 設立者의 意圖에 따라 必要한 圖書館資料라든가 閱覽施設이라든가 其他 모든 施設을 自由로 갖출 수 있는 것으로 圖書館法이나 施行令에 抵觸되는 事項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國·公立 및 私立의 各種圖書館 即 公共圖書館, 大學圖書館, 學校圖書館에서 適用할 때 自然히 特殊圖書館의 職員도 大部分이 이에 準用하게 될 것이라는 點에서 이 問題를 重點으로 取扱한 것이다.

圖書館의 重要성과 司書業務의 專門性を 認定하여 圖書館法이 制定되었고 또한 同施行令이 制定公布되었음은 司書職이 하나의 專門職으로서 制度化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制度는 國·公立의 機關이나 私立機關을 莫論하고 一律성이나 統一성을 期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司書資格은 어느機關이든 다 같이 適用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學校圖書館에 司書敎師를 둔다고 法律로 定하였으면서도 그것이 缺如된다 든가 또한 大學圖書館에 司書職이 있으면서도 司書를 두지 않는다 든가 官廳圖書館에 司書職名이 있으나 自體에 限한 것이고 다른 官廳과는 通用되지 않는다 든가 하는

(4面に 繼續)

	2. 中等學校 正教師資格證 所持者로서 3年以上의 教育經歷을 가지고 所定の 司書教師 講習을 받은 者	2. 國民學校 正教師資格證 所持者로서 3年以上의 教育經歷을 가지고 所定の 司書教師 講習을 받은 者
一級 司書教師	1. 大學卒業者로서 在學中 圖書館學科를 專攻하고 所定の 敎職課程을 履修한 者	1. 大學卒業者로서 在學中 圖書館學科를 專攻하고 所定の 敎職課程을 履修한 者로서 補修教育을 받은 者
	2. 中等學校 準敎師資格證 所持者로서 2年以上의 教育經歷을 가지고 所定の 司書敎師講習을 받은 者	2. 國民學校 準敎師資格證 所持者로서 2年以上의 教育經歷을 가지고 所定の 司書敎師講習을 받은 者

三. 教育公務員 報酬規程(大統領令 第1915號)의 改正案(司書敎師)

1. 教育公務員 報酬規程 別表4의 教育公務員 基本號級表 다表 및 同規程 別表 3의 教育公務員 經歷數 控除表를 改正하고자하는 案은 다음과 같습니다.

A. 現教育公務員 基本號級表(司書敎師에 關한)

別表 4

(다)

資 格 別	基 本 號 級
司 書 敎 師	15號 1級
實 技 敎 師	20號 1級
養 護 敎 師	20號 1級

(8面에서 繼續)

矛盾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特殊法人이나 民間團體의 圖書館에 있어서도 반드시 司書의 資格을 認定하여 준다고는 하기 어려운 것임으로 이와 같은 경우를 考慮하여 반드시 身分과 資格에 對한 保障이 確立되어야 할 것이 要求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國家나 社會로 부터 專門職인 司書

B. 改正案(司書敎師)

別表 4

(나)

資 格 別	勤務學校別			
	高 校	中 校	國民校	特殊校
校長 또는 特殊學校長	9號 2級	11號 1級	13號 2級	9號 2級
校監, 1級正敎師 및 1級司書敎師 또는 特殊學校校監	11號 2級	13號 1級	15號 2級	11號 1級
2級正敎師 및 2級司書敎師 또는 特殊學校敎師	13號 1級	15號 1級	17號 2級	14號 1級
準敎師	14號 2級	17號 1級	19號 2級	—
敎導敎師 또는 特殊校敎導敎師	11號 1級	13號 1級	—	11號 1級

2. 理由; 教育公務員法の 改正案(本建議案)의 司書敎師의 資格基準이 正敎師와 같은 水準의 學歷, 教育經歷, 講習履修者이기 때문입니다.

四. 法改正後의 經過措置

本建議案에 依한 法改正 以前에 發付된 司書敎師資格證은 一級 司書敎師 資格證으로 看做하면 될 것입니다.

에게 큰期待를 가질수 있게 되는 것이다.

註: 이 글中 第3章 (公務員으로서의 特殊圖書館職員) 의 內容은 國會圖書館報 1965年 4月號에 筆者가 「專門職으로서의 司書職」이란 題目으로 圖書館法 施行令과도 關連하여 發表한바 있음.

(筆者 國會圖書館 圖書課長)